

의안번호	2126657
의 퇴 인	윤미향의원
회 답 일	2024. 5. 13.
추 계 번호	24B0253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제3·4항 신설(여성농업인의 육성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제3·4항 신설(여성농업인의 육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여성농업인의 육성—여성농업인 가족돌봄 지원,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사업 실시(안 제27조제3·4항 신설)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 지원 사업,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가족돌봄의 지원금액 및 대상자, 시행하게 될 건강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사업의 종류,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함

-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여성농업인 가족돌봄 지원, 건강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및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에 따라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며 최근 4년간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(여성농업인 관련 사업) 영농여건개선교육 등 역량강화, 특수건강검진, 농번기 주말 돌봄 지원 등

[표 1]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주요내용	2021	2022	2023	2024
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- 여성농업인 역량강화	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,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(농작업 편의장비 및 정책교육), 청년 여성 농업·농촌분야 탐색교육,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	1,733	2,433	2,433	1,192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	여성농업인에게 자주발생하는 농작업성 질환에 특화된 특수건강검진 실시	—	1,990	1,990	4,300
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-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	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·운영 지원,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, 농번기 주말 돌봄지원 등을 통한 농촌 보육여건 개선	3,811	4,084	4,416	3,49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